

## 직원을 위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보건부 커미셔너의 2021년 12월 13일 명령에 대하여, 업무 현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및 이 명령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늦어도 2021년 12월 27일까지 업무 현장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6항에 따라, 직원은 이 요건에서 면제되기 위해 합당한 편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편의란 종교적 이유 및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적 이유(임신 진단서 등)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해 백신 접종 기한을 약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합당한 편의 요청은 사회복지사, 성직자 또는 직원이 피해자임을 기타 전문가들이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편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지침은 과도한 어려움의 존재 여부가 다양한 요인 분석을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편의의 본질 및 비용
-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드는 전반적 금융 리소스, 시설에 고용된 직원 수, 시설에 드는 비용 및 리소스에 대한 효과(즉, 가성비)
- 전반적 금융 리소스, 규모, 직원 수 및 직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과 위치(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더 큰 시설의 일부인지의 여부)
- 노동력의 구조 및 기능, 지리적 격리 정도 및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관리적 또는 금융적 관계를 포함하여, 고용주 운영의 유형
- 시설 운영에서 편의 제공으로 인한 영향

첨부된 체크리스트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는 합당한 편의를 원하는 직원들로부터 또는 COVID-19 백신 접종 요건으로부터 면제받기를 원하는 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청을 평가할 때 고용주 및 관리자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라이선스를 가진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아니며 법적 조언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당한 편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및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편의 제공에 대한 근거로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

### 의료적 이유로 인한 편의 제공

모든 의료 문서는 유효한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가 백신 접종을 의료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1. 영구적 의료 면제는 다음 상황일 때 부여됩니다.

- 직원이 이전 백신 접종 또는 세 가지 승인된 모든 COVID-19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을 보였을 때
- 직원이 승인된 세 가지 COVID-19 백신 모두의 성분에 기존에 알려진 진단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2. 임시 의료 면제는 다음 상황일 때 부여됩니다.

- 직원이 COVID-19 의 단일 클론 항체 또는 회복기 혈장 치료를 받은 후 90 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문서를 제출했을 때.
- 직원이 최근에 적절한 백신 접종 반응 능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치료 때문에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 CAR T 세포 요법 또는 기타 요법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문서를 제출했을 때.
- 직원이 심낭염 또는 심근염을 가진 경우

임시 의료 면제 기간은 의료 문서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정해지게 됩니다. 직원은 임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위 1 또는 2 항목에 해당되면 직원은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백신 접종이 면제됩니다.

### 편의

- COVID-19 에 대한 주 1 회 PCR 검사, 먹거나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먹거나 마실 때는 타인으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 두기.
- 편의를 제공받는 직원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
- 휴가
- 기타 \_\_\_\_\_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편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편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 이름: \_\_\_\_\_ 일자: \_\_\_\_\_

임시 편의 종료일: \_\_\_\_\_

고용주 대표: \_\_\_\_\_ 직책: \_\_\_\_\_

**종교상 이유로 인한 편의 제공**

1. 이 요청이 오로지 개인적, 정치적 또는 철학적 선호 사항에 근거하나요?

- 정부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또는 의료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백신은 안전하지 않거나 또는 효과가 없습니다.
- COVID 은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타 개인적, 정치적 또는 철학적 신념의 표현 \_\_\_\_\_

**위의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편의 요청의 유일한 근거라면, 직원은 종교적 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 이 요청이 신실하게 간직한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나요?

- 직원은 신념이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지 설명하거나 또는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 > 예컨대, 특정 종교를 믿는 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 성직자의 서한은 요구되지 않지만, 성직자가 직원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도움이 되고 설득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모르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성직자가 작성한 서한은 도움도 안 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 직원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이전에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 > 직원이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면, 그 백신이 그들이 믿는 종교에 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직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이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 그렇다면, 해당 직원은 기타 흔하게 사용되는 의약품, 식품/음료 또는 그들의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타 물질의 목록을 작성/서술해야 합니다.

직원은 유산의 결과일 것으로 우려되는 태아의 세포를 사용하여 개발 및/또는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직원은 이부프로펜(애드빌),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또는 태아 세포 유도 라인을 사용하여 유사하게 개발 또는 테스트된 기타 의약품과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나요? 이런 행위는 종교적 신념과 일관되지 않으며 이는 대체로 직원에게 편의가 부여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이 해당되면, 직원은 종교상 이유로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의**

- COVID-19 에 대한 주 1 회 PCR 검사, 먹거나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먹거나 마실 때는 타인으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 두기.
- 편의를 제공받는 직원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
- 휴가
- 기타 \_\_\_\_\_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편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편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 이름: \_\_\_\_\_ 일자: \_\_\_\_\_

고용주 대표: \_\_\_\_\_ 직책: \_\_\_\_\_